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이 예 지

요 약

- 01 I. 논의 배경 및 목적
- 02 II. 가계자산 및 주식 소유자 현황과
주식자본이득 과세 논의시 고려사항
- 05 III.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
- 22 IV.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27 V. 결론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 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으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찬성 입장이 있음
- 반면,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의 과세제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

-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이루고 있음 (상장 주식 소액주주 기준)

□ 주식의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 중립성 제고, 증권거래세 개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논의 배경 및 목적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기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양도소득(이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행 금융세제가 이를 반영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 이에 2020년 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소득이 과세로 전환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도입 당시 시간을 두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간 합의로 2025년으로 유예하였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하며, 연구 범위는 금융자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제로 정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환원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²⁾,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부담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법과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세제개선 방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개인이 주식 보유와 처분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 원인을 살펴보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인하고자 주요 국가의 주식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13-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및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6.25.

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2024.7.3, p.51.

II. 가계자산 및 주식 소유자 현황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 논의시 고려사항

1. 가계자산 및 주식 소유자 현황

주식 자본이득 과세 논의에 앞서 주요 국가의 가계자산 구성현황을 살펴본다([표 1]).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금융자산 비중이 50% 이상이다. 가계금융자산 구성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금·예금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영국은 보험·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는 후술할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 비교시 국가의 가계자산 비중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는 우리나라의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여준다. 코스피시장은 전체 소유주식 수 중 법인소유자 비중이 44%로 가장 많으나,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개인소유자 비중이 각각 66.8%,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 소유종목수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1종목 소유자가 429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30.3%), 대부분 10종 미만을 소유(84.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 1] 주요 국가의 가계자산 구성 추이

(단위: %)

Panel A: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 구분 |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¹⁾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¹⁾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¹⁾ |
| 비금융자산 | 64.4 | 28.1 | 45.2 | 38.0 | 63.6 | 27.5 | 44.6 | 37.9 | 64.4 | 28.5 | 46.2 | 37.0 |
| 금융자산 | 35.6 | 71.9 | 54.8 | 62.0 | 36.4 | 72.5 | 55.4 | 62.1 | 35.6 | 71.5 | 53.8 | 63.0 |

Panel B: 금융자산의 구성

| 구분 | 2019년 | | | | 2020년 | | | | 2021년 | | | | |
|----------------|------------------|------|------|------|-------|------|------|------|-------|------|------|------|------|
|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
| 현금·예금 | 44.8 | 12.1 | 25.1 | 53.4 | 43.4 | 13.4 | 25.7 | 54.8 | 43.4 | 13.2 | 27.1 | 54.2 | |
| 금융 투자 상품 | 주식 ²⁾ | 15.3 | 35.1 | 10.5 | 10.3 | 19.4 | 36.2 | 9.8 | 9.5 | 20.8 | 40.2 | 11.1 | 10.4 |
| | 채권 | 3.6 | 6.1 | 0.2 | 1.4 | 3.4 | 4.8 | 0.2 | 1.4 | 2.3 | 2.3 | 0.2 | 1.3 |
| | 펀드 | 2.8 | 12.9 | 4.2 | 3.9 | 2.4 | 13.1 | 3.9 | 4.0 | 2.3 | 15.5 | 4.3 | 4.5 |
| | 소계 | 21.7 | 54.1 | 14.9 | 15.6 | 25.2 | 54.1 | 13.9 | 14.9 | 25.4 | 58.0 | 15.6 | 16.3 |
| 보험·연금 | 32.8 | 31.1 | 56.2 | 28.0 | 30.8 | 29.9 | 56.4 | 27.6 | 30.4 | 28.6 | 53.1 | 26.7 | |
| 기타 | 0.6 | 2.7 | 3.8 | 3.0 | 0.7 | 2.6 | 4.0 | 2.8 | 0.8 | 0.2 | 4.2 | 2.8 | |

※ 주: 1) 일본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 연도는 각각 2018, 2019, 2020년말 기준임

2) 미국의 주식 비중은 주식 및 주식 외 출자지분을 포함함

※ 자료: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2022.8.23.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3) [표 2] 주식 소유자 현황에서 대주주 지분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4) 1,000종목 이상 소유자는 211명, 500종목~1,000종목 미만 소유자는 1,045명, 100종목~500종목 미만 소유자는 32,74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2.8.23., p.8).

표 2 우리나라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단위: 억주)

Panel A: 시장별 및 소유자 형태별 소유주식수 현황 (2023년 12월 결산 기준)

| 구분 | 코스피시장 | | 코스닥시장 | | 코넥스시장 | | 전체 합계 | |
|-----|-------|--------|-------|--------|-------|--------|-------|--------|
| | 소유주식수 | 비율 | 소유주식수 | 비율 | 소유주식수 | 비율 | 소유주식수 | 비율 |
| 개인 | 225 | 37.2% | 344 | 66.8% | 6 | 60.0% | 575 | 50.9% |
| 법인 | 266 | 44.0% | 146 | 28.3% | 4 | 40.0% | 415 | 36.8% |
| 외국인 | 114 | 18.8% | 25 | 4.9% | 0 | 0.0% | 139 | 12.3% |
| 합계 | 605 | 100.0% | 515 | 100.0% | 10 | 100.0% | 1,129 | 100.0% |

Panel B: 상장법인 소유종목수별 소유자 분포 현황 (2023년 12월 결산 기준)

| 소유종목수 | 1종목 | 2종목 | 3종목 | 4종목 | 5종목 | 6~9종목 | 10종목 이상 | 합계 |
|-------|-----------|-----------|-----------|-----------|---------|-----------|-----------|------------|
| 소유자수 | 4,285,971 | 2,363,778 | 1,542,706 | 1,114,988 | 837,536 | 1,878,468 | 2,134,206 | 14,157,653 |
| 비율 | 30.3% | 16.7% | 10.9% | 7.9% | 5.9% | 13.3% | 15.1% | 100.0% |

※ 주: 소유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전자등록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2.8.23., p.4,9.

2.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주요 고려사항

가. 과세소득 관점에 따른 주식 자본이득 과세 견해

자본이득은 자본적 자산⁵⁾의 시가 또는 처분가액과 그 자산 원가와와의 차액으로 정의된다.⁶⁾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견해는 과세소득에 대한 관점에 따라 상반된다.⁷⁾ 소득원천설은 소득을 노동·사업 또는 재산과 같은 특정 원천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유입되는 수입으로 정의하므로, 주로 요소 소득이 과세소득을 구성한다.⁸⁾ 이에 의하면, 자본이득은 장기간의 가격 변동에 의해 실현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자본이득 과세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므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⁹⁾ 이에 의하면, 자본이득은 경제력 증가를 수반하므로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¹⁰⁾

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주주의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세체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주는 주식 보유시 배당소득, 처분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으며 두

5) 일반적으로 매매 또는 소비목적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서울: 삼일인포마인, 2023, pp.106~107).

6) 위의 글, pp.106~107.

7) 위의 글, p.43 및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연구보고서 10-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pp.25~27.

8) F. Neumann, B. Fuisting 등에 의하여 주창된 개념이다.

9) 샨츠(G.V.Schanz), 헤이그(R.M.Haig), 사이몬스(H.C.Simons) 등에 의하여 주창된 개념이다.

10) Cunningham and Schenk (1993)은 자본이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득은 원천이 동일한 주식이고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다시 말해,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납세자들에게 조세차익(arbitrage)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Poterba and Summer(1985)은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주식과 과세주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과세주식의 할인율과 과세주식의 세후할인율이 동일한 경우 주주는 두 주식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 무차별함을 식(1)을 통해 증명하였다. 즉 식(1)에서 $\frac{t_d - t_{cg}}{1 - t_{cg}}$ 은 자본이득세부담(t_{cg})보다 배당소득세부담(t_d)이 높은 경우에 주주들이 과세주식에 대해 추가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배당소득세 불이익지수로 불리운다.¹¹⁾ 배당소득세 불이익지수는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큰 경우 주식 투자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소득에 대한 세제중립성¹²⁾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R = \frac{r}{1 - t_{cg}} + \frac{t_d - t_{cg}}{1 - t_{cg}} d \quad (\text{식1})$$

* R: 과세주식의 세전요구수익률, r: 비과세주식 할인율, t_{cg} : 자본이득 유효세율, t_d : 배당소득 유효세율, d: 배당수익률

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시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는 크게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와 동결효과(lock-in effect)에 의해 설명된다. 자본화효과는 투자자들이 주식으로부터 발생할 미래수익의 현재가치를 예상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주식 자본이득세는 미래 현금흐름의 기대가치를 낮추므로 주식 수요가 감소하여 주식가격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¹³⁾

한편,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자본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실현을 이연시킬 유인이 있는데, 이를 동결효과라 한다. 이에 의하면, 주식 공급 감소에 따라 주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만약에 자본손실 공제가 허용될 경우 주식 하락시 손실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반대로 주식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Feldstein et al.(1980)은 자본이득세율이 높을수록 보유 주식의 취득원가가 낮은 투자자들의 주식 처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동결효과를 지지한다.¹⁴⁾ 그 밖에, 이러한 주식 자본이득 과세로 인한 동결효과 등 문제점 보다 과세효익(세원확보, 조세형평성 등)이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¹⁵⁾ 요약하면, 주식 자본이득세와 주식가격 간의 관계는 동결효과와 자본화효과 등 자본시장에

11) 차병섭·이영, 「국세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권 제4호, 2007.

12) 세제중립성이란 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의안번호 2103324)」, 2020.11., p.120).

13) 자본화효과를 지지하는 실증연구로는 Guenther and Willenborg(1999), Lang and Shackelford(2000) 등이 있다.

14) 동결효과를 지지하는 실증연구로는 Landsman and Shackelford(1995), Reese(1998), Poterba and Weisbenner(2001) 등이 있다.

15)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Paris: OECD, 2006. p.12.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¹⁶⁾

라. 결집효과와 세수효과

자본이득 과세시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다. 결집효과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익을 발생연도가 아닌 처분연도에 일시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다.¹⁷⁾

주식 자본이득세와 세수 간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일관적이지 않다. 자본이득세율 인하시 동결효과 완화로 자본이득 실현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¹⁸⁾ 반면, 자본이득세율 인하는 기업의 유가증권을 통한 자본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가 세수증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⁹⁾ 또한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자본이득세수 감소를 야기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체투자 등에 의한 세수 증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증거들도 존재한다.²⁰⁾ 이렇듯 자본이득세와 세수는 관련 미시·거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결과를 단정짓기 어렵다. 후술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기준, 3년(2025~2027)간 4조 328억원(연 평균 1조 3,443억원) 세수 증가를 예상하였고, 정부는 3년간 4조 291억원(연 평균 1조 3,43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¹⁾

III.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

1. 우리나라

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소득세법」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펀드) 등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품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하에서는 각 소득 원천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6) Dai et al.(2008)

17) 김완석·정지선, 앞의 글, pp.113~114.

18) Feldstein, M., J. Slemrod and S. Yitzhaki, The Effects of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4): 777~791, 1980.

19) Minarik, J.,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Com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1): 93~110, 1984.

20) Cook, E. and J. O'hare, Issues Relating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National Tax Journal* 40(3): 473~488, 1987.

21)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11., pp.183~184.

(1)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으로 정의한다.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배당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을 의미한다.²²⁾ 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이자뿐만 아니라 사채의 이자·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²³⁾

소득세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내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²⁴⁾ 또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 않았지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배당으로 의제한다(이하, 의제배당).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이자·배당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²⁵⁾ 원천징수(일반 원천징수세율 14%)²⁶⁾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외의 금융소득²⁷⁾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고(6~45%),²⁸⁾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이자·배당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으로 과세되고,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²⁹⁾ 배당소득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조정이 추가된다.³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전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이하, 귀속 법인세)의 일정분을 공제하는 주주단계 조정방법을 적용한다(이하, 임퓨테이션 방법). 개인주주가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23) 김완석·정지선, 앞의 글, p.184.

2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

25)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소득

26) 비영업대금이익 및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실명 이자·배당소득은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시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항 각 호).

27) 귀속법인세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28) 2천만원 초과시 적용 세율은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9)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30)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23판, 서울: 삼일인포마인, 2023, pp.35~44.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³¹⁾을 지급받고 해당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 실제로 받은 배당금과 귀속법인세(배당소득의 10%)를 가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귀속법인세를 세액공제한다(이하, 배당세액공제).³²⁾

(2) 양도소득

「소득세법」은 자본이득 중 실현된 이득에 대해 과세한다. 상장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거래분이고, 주권비상장법인 주식과 국외 주식³³⁾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³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기준인 대주주의 범위는 [표 3]과 같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① 지분율 또는 ② 시가총액³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이다.³⁶⁾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³⁷⁾ 지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이하, 최대주주) 최대주주에 속하는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에 포함된다.

[표 3]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대주주 범위

| 구분 | 상장주식 | | | | | | 비상장주식 |
|-----------------|--------|-------|---------|-------|---------|-------|-----------------------|
| | 코스피시장 | | 코스닥시장 | | 코넥스시장 | | |
| | 장내 거래 | 장외 거래 | 장내 거래 | 장외 거래 | 장내 거래 | 장외 거래 | |
| 과세 여부 | ○ | ○ | ○ | ○ | ○ | ○ | ○ |
| 대주주 | ① 지분율 | | 2% 이상 | | 4% 이상 | | 4% 이상 |
| | ② 시가총액 | | 50억원 이상 | | 50억원 이상 | | 10억원 이상 ³⁾ |
| 대주주 이외 주주 과세 여부 | × | ○ | × | ○ | × | ○ | ○ |

※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 40억원 이상

※ 자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및 제167조의 8 규정을 토대로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은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장외 파생상품(예,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해외파생상품이고, 2021년 4월부터 장외파생상품 중 차익결제거래(CFD)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³⁸⁾ 다만, 주가지수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종목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된 파생상품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한편, 채권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앞서 살펴본

31)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법인으로부터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의제배당, 인정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 배당 제외),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다.

32)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및 제56조

3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내국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이 포함한다.

3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35) 시가총액은 상장주식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방법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내지 제5항

3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 1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3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 각 호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나, 채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해 결집효과를 고려하여 분류과세한다.³⁹⁾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본원칙은 같은 자산, 즉 주식은 주식끼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구분하여 계산한다.⁴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소득 기본공제’이며,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별로 연 250만원이다.⁴¹⁾ 양도차손은 오직 동일 자산 내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⁴²⁾ 양도소득세 세율은 [표 4]와 같이 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 기업 규모에 따라 10~30%로 차등적이고, 파생상품은 10%이다.⁴³⁾

[표 4] 주식 양도소득세율

| 구분 |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국외 주식 |
|------|-------------|----------------------------|---------------|---------------|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20%(중소기업 10%) |
|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5% ¹⁾ | | |
| | 1년 미만 보유 | 30%(중소기업 제외) | | |
| 소액주주 | | 장내 거래분 과세 제외 ²⁾ | 20%(중소기업 10%) | |

※ 주: 1) 6천만원+(3억원 초과액×25%), 2)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10%, 이 외의 기업은 20%임

※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2호 규정을 토대로 요약

(3) 증권거래세

주식이 유상으로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⁴⁴⁾ 과세대상은 국내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이다. 납세의무자는 거래방식에 따라 상이한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또는 양수인이다.⁴⁵⁾ 과세표준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이다.⁴⁶⁾ 세율은 0.35%이나 종목별 탄력세율 운용에 따라, [표 5]와 같이 2024년 기준, 코스피 0.03%(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과세)⁴⁷⁾, 코스닥 0.18%, 코넥스 0.1%,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장외 매매거래(K-OTC) 0.18%, 그 외 장외거래 0.35%이다.⁴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대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추어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이

39)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40)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41)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42)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43)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44) 「증권거래세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5) 「증권거래세법」 제3조

46) 그 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이다.

4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48)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5년부터 코스피는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 5] 2023년 이후 연도별 증권거래세율 변화

| 구분 | 코스피시장 ^{주)}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K-OTC | 그 외 장외거래 |
|-------|---------------------|----------------|-------|----------------|----------|
| 2023년 | 0.05% | 0.20% | 0.10% | 0.02% | 0.35% |
| 2024년 | 0.03% (△0.02%) | 0.18% (△0.02%) | 0.10% | 0.18% | 0.35% |
| 2025년 | 0% (△0.03%) | 0.15% (△0.03%) | 0.10% | 0.15% (△0.03%) | 0.35% |

※ 주: 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과세됨

※ 자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규정을 토대로 요약

(4) 배당소득, 주식 자본이득 및 증권거래세 징수 현황

[표 6]은 2022 귀속연도 기준 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현황을 보여준다. 신고된 종합과세 배당소득금액은 21.4조원이고, 신고된 주식 양도차익은 2.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기준, 신고된 전체 금융소득금액 중 83.96%가 배당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결정세액 중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이하, 일반기업)의 비중이 각각 54.97%와 45.03%이지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결정세액의 대부분은 일반기업(95.21%) 주식 양도분이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시장이 전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54.79%를 차지하고, 납부할세액은 코스닥시장 거래분이 66.88%로 가장 높았다.

[표 6] 배당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현황 (2022 귀속연도 기준)

(단위: 명, 건, 백만원)

Panel A: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¹⁾

| 금융소득 규모별 | 신고인원 | 금융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비중 ²⁾) |
|-----------|---------|------------|-----------|----------------------------|
| 8.8천만원 이하 | 152,183 | 5,548,574 | 2,016,805 | 3,531,769 (63.65%) |
| 8.8천만원 초과 | 39,318 | 19,960,546 | 2,075,249 | 17,885,297 (89.60%) |
| 합계 | 191,501 | 25,509,120 | 4,092,053 | 21,417,067 (83.96%) |

Panel B: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¹⁾

| 구분 | 자산건수 (비중 ²⁾) | 양도차익 (비중 ²⁾) | 결정세액 (비중 ²⁾) |
|-------|--------------------------|--------------------------|--------------------------|
| 상장주식 | 1,502 | 198,186 | 6,711 |
| 중소기업 | 630 (41.94%) | 49,287 (24.87%) | 3,689 (54.97%) |
| 일반기업 | 872 (58.06%) | 148,898 (75.13%) | 3,022 (45.03%) |
| 비상장주식 | 182,775 | 2,235,022 | 340,042 |
| 중소기업 | 3,274 (1.79%) | 189,722 (8.49%) | 16,283 (4.79%) |
| 일반기업 | 179,501 (98.21%) | 2,045,300 (91.51%) | 323,758 (95.21%) |
| 합계 | 184,277 | 2,433,208 | 346,753 |

Panel C: 증권거래세 신고 현황¹⁾

| 구분 | 과세표준 (비중 ²⁾) | 납부할 세액 (비중 ²⁾) |
|---------------------|--------------------------|----------------------------|
| 코스피시장 | 2,222,639,795 (54.79%) | 1,576,471 (27.09%) |
| 코스닥시장 ³⁾ | 1,711,032,483 (42.18%) | 3,892,597 (66.88%) |
| 기타 ⁴⁾ | 122,615,797 (3.02%) | 350,859 (6.03%) |
| 합계 | 4,056,288,075 | 5,819,927 |

※ 주: 1) 배당소득: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자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해당 연도 양도분 기준 (과세미달 및 비과세 제외, 해당 연도 귀속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 증권거래세: 해당연도 거래분 신고현황(증권거래세 비과세주권 제외, 농어촌특별세 제외), 2) 비중: Panel A 금융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Panel B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중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 외 거래분이 차지하는 비중, Panel C 전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 중 각 시장별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 3) 코넥스주권 및 K-OTC 주권 포함, 4) 기타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 및 비상장주식 포함

※ 자료: 국세통계(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현황,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증권거래세 신고 현황)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나. 금융투자소득세

(1) 기존 과세제도의 문제점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조세합리성 문제가 제기되었다.⁴⁹⁾ 첫째, 열거주의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비과세가 광범위해졌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조세형평성이 저해된다. 예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나 채권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되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 양도분은 비과세한다.

둘째,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상품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에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일지라도 과세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개인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나, 개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셋째, 양도소득에 한하여 같은 자산 분류 내에서만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다른 금융상품의 손실과 무관하게 과세대상 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응능부담원칙을 저해한다.

49)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앞의 글, 2020.6.25., p.6.

넷째, 집합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불완전한 과세와 손실 위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간·다른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 양도차익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⁵⁰⁾

(2)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하나의 범주로 분류하여 과세방식과 세율을 일원화함으로써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제고한다. 둘째,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셋째,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였다. 넷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1.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였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② 집합투자증권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환매 등)로 발생하는 이익, ③ 파생결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된다.⁵¹⁾⁵²⁾ 요약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한다(그림 2 참조). 이에 종전 비과세되는 채권 양도소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금융소득⁵³⁾으로 과세된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환매·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일부 파생상품의 거래·행위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넷째, 파생결합사채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로 과세된다.

50) 예로, A 펀드에서 채권양도소득 2백만원 이익, 주식양도손실 1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도 채권양도소득 2백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51) 「소득세법」 제87조의 6 제1항

52) 다만, 공익신탁의 이익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87조의 3).

53)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금융투자소득과 구분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되며,⁵⁴⁾ 금융투자소득금액은 ① 국내 상장주식 등⁵⁵⁾과 ② 그 외 금융상품⁵⁶⁾ 두 그룹으로 구분 계산한 후 합산한다. 이는 각 그룹 내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이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통산이 허용됨을 의미한다.⁵⁷⁾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금액합계액⁵⁸⁾에서 5년 내에 금융투자이월결손금⁵⁹⁾과 기본공제를 순서대로 차감하여 산정된다.⁶⁰⁾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 등은 5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250만원이다.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이 적용된다(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⁶¹⁾

그림 1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text{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text{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text{금융투자소득금액} - \text{①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text{② 기본공제}) \\ \times \text{세율}(3\text{억원 이하 } 20\%, 3\text{억원 초과분 } 25\%)$$

금융투자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금융회사의 반기별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자의 예정·확정신고로 구분된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 관리시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종료된다.⁶²⁾⁶³⁾ 원천징수세액은 계좌보유자 별 금융투자소득금액 합계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⁶⁴⁾ 납세의무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⁶⁵⁾ 최종적으로, 누진세율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⁶⁶⁾

54)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87조의 4 제1항

55) 국내 상장주식의 증권시장에서 양도, 주권비상장법인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K-OTC에 따른 장외매매거래,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

56) 해외 주식, 해외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채권 양도이익, 비상장주식, 사모펀드 등

57) 「소득세법」 제87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 9 제1항

58)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7조의 4 제3항).

59) 파생상품소득은 투자손실 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월공제 한도는 계약 체결시 납입한 위탁증거금과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6).

60) 국내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그 외 금융상품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 5).

61) 「소득세법」 제87조의 18 내지 제87조의 19

6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9호

63) 금융회사 등은 반기 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48조의 2).

64)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65) 「소득세법」 제87조의 21 내지 제87조의 22

66) 「소득세법」 제87조의 23

그림 2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과세체계 비교

| 현행 | 2025년 이후 |
|---|---|
| <p style="text-align: center;">이자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 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 <p style="text-align: center;">이자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 <p style="text-align: center;">배당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 <p style="text-align: center;">배당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좌 등)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좌 등) |
| <p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 ·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 |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투자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 채권 양도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 파생상품 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 <p style="text-align: center;">비과세 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

※ 자료: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482, 2126483)」, 2024.2., p.7.

2. 주요 국가의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는 본 보고서의 범위와 동일하게 개인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한정하고,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율은 본세만 조사한다.

가. 미국: 장기보유 자본이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미국 연방소득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은 포괄주의에 따라 면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⁶⁷⁾⁶⁸⁾ 이에 주식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일반소득(ordinary income)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10~37% 초과누진세율⁶⁹⁾).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소득은 적격배당(qualified dividends), 주식 자본이득은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이 그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시 세율은 개인의 연간소득에 따라 15·20% 이다.⁷⁰⁾ 이하에서 배당소득세와 주식 자본이득세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적격배당은 내국법인 또는 적격 외국법인(qualified foreign corporations)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이전 배당시점의 60일 전부터 시작하여 120일 기간 동안 최소한 주식을 6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적격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⁷¹⁾⁷²⁾

주식 자본이득은 실현된 가액에서 판매 시점의 수정장부가액(adjusted tax basis)을 차감하여 계산된다.⁷³⁾ 자본손실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가능하나, 자본손실이 자본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자본손실은 1,500 USD(부부합산신고 3,000 USD)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⁷⁴⁾ 일반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순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 공제된다.⁷⁵⁾

67) 'Earmst & Young(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3-24』, 2024. pp.1673~1679'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68) IRC §61

69) 연방소득세율은 납세자 지위에 따라 개인단위과세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seperately), 공동신고 선택 기혼자(Married filing jointly), 독신자(Single) 및 독신세대주(Head of household) 4종으로 세분되어 있다. 2024 과세연도 독신자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소득(USD) ~11,600:10%, 11,601~47,150:12%, 47,151~100,525:22%, 100,526~191,950:24%, 191,951~243,725:32%, 243,726~609,350:35%, 609,351~:37% 이다(IRC §1).

70) 2024 과세연도 독신자 기준, 과세소득(USD) 47,026~518,900인 경우 15%, 과세소득 518,900 초과시 20% 세율이 적용된다(IRC §1(h)).

71)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세법연구 2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44.

72) 이러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고전적인 과세체계(Classical system)라 일컫는다.

73) IRC §1001(b)

74) IRC §1211(b)

75) IRC §1212

요약하면, 미국은 상장·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되, 손익통산·무제한 자본손실 이월공제 등을 통해 투자손실에 대한 세부담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한 주식의 자본이득과 적격배당소득 간, 단기보유 주식의 자본이득과 비적격배당 소득 간에는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두 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표 기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주식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세율 (2024 과세연도 기준)】

| 구분 | 배당소득 | 주식 자본이득 |
|---------------------------|--------------|--------------|
| 적격배당소득, 장기보유(1년 이상) 자본이득 | 분리과세(15·20%) | 분리과세(15·20%) |
| 비적격배당소득, 단기보유(1년 미만) 자본이득 | 종합과세(10~37%) | 종합과세(10~37%) |

※ 자료: 미국의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재정리함

나. 영국: 자본이득에 대한 저율 분류과세

영국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은 종합소득과 분류되어 과세되고, 각각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⁷⁶⁾ 배당소득 과세표준은 ‘배당소득에서 배당금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배당금 공제는 2024-2025 과세연도⁷⁷⁾ 기준 500 GBP⁷⁸⁾으로, 이는 일종의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⁷⁹⁾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 구간 8.75%, 고세율 구간 33.75%, 추가세율 구간 39.35%이다. 배당소득세율을 판단하는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합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2024-2025 과세연도 소득은 급여 29,570 GBP, 배당 3,000 GBP이고 비과세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20,000 GBP이고 이중 급여 17,000 GBP에 대해 기본세율 구간 종합소득세율 20%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은 3,000 GBP에서 연간 배당면제금액 500 GBP를 차감한 2,500 GBP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율 8.75%가 적용된다. 이렇듯 배당소득 과세소득 구간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판단하나, 각 과세소득 구간 별 종합소득세율 20%, 40%, 45%와 비교하면, 배당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으므로 분류과세성격을 가진다.⁸⁰⁾

영국은 주식 처분 단계에서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⁸¹⁾ 매매대금에 대한 인지세가 과세된다. 주식 자본이득 과세대상은 모든 주식이며 분류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자본이득에서

76) ‘영국정부 홈페이지, Tax on dividends (최종 검색일: 2024.4.30.), <<https://www.gov.uk/tax-on-dividends>>’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77) 영국의 소득세 과세연도는 4월 6일부터 그 다음연도 4월 5일이다.

78) 2023-2024 과세연도 기준, 1,000 GBP

79)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63.

80) 위의 글, p.61.

81) 영국정부 홈페이지, Capital Gains Tax: what you pay it on, rates and allowances (최종 검색일: 2024.4.30.), <<https://www.gov.uk/capital-gains-tax>>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연간면제금액, 당기 공제가능 자본손실,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된다. 연간 자본이득 면제금액(capital gains tax-free allowance)은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3,000 GBP, 신탁 1,500 GBP⁸²⁾이다.⁸³⁾ 자본손실은 국세청에 신청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자본손실은 한도와 기한 없이 이월공제된다. 아울러 영국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자본손실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 조세회피 방지 규정(Targeted Anti-Avoidance Rule, TAAR)에 따라 주식 단기환매거래(bed and breakfasting)를 통한 자본손실은 허용가능손실로 보지 않는다.⁸⁴⁾ 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자본이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기본세율 소득구간이면 10%, 해당 소득구간 초과시 20%이다.⁸⁵⁾

영국은 주식 거래시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인지대체세(Stamp Duty Reserve Tax, SDRT)를 부과한다.⁸⁶⁾ 주식 양도증서(stock transfer form)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거래금액이 10,000 GBP 초과시 인지세(Stamp Duty)⁸⁷⁾가 부과되며 세율은 0.5%이다.

요약하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소득이 같다는 가정 하에 동일 과세소득 구간 별로 세율을 비교하면, 배당소득세율(8.75~39.35%)과 주식 자본이득세율(10~20%)은 종합소득세율(20~45%) 보다 낮고 기본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 보다 높다. 면제금액은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배당소득 보다 주식 자본이득이 6배 높다.

【표 8】 영국의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세율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단위: GBP)

| 세율구간 | 종합소득 | | 배당소득 | | 주식 자본이득 | |
|---------------------------|--------------------|-----|--------|------|------------------|------------------|
| | 과세표준 ¹⁾ | 세율 | 세율 | 면제금액 | 세율 ²⁾ | 면제금액 |
| 기본세율 구간 (Basic rate) | 12,571~50,270 | 20% | 8.75% | 500 | 10% | 3,000 (신탁 1,500) |
| 고세율 구간 (Higher rate) | 50,271~125,140 | 40% | 33.75% | | 20% | |
| 추가세율 구간 (Additional rate) | 125,141~ | 45% | 39.35% | | | |

※ 주: 1) 과세소득은 개인인적공제(12,570 파운드)가 포함된 금액임, 2) 수탁자 및 대리인 20%, 사업자공제 및 투자자 공제 적용시 10%

※ 자료: 영국의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재정리함

82) 2023-2024 과세연도 6,000 GBP, 신탁 3,000 GBP

83) 연간 자본이득 면제금액은 매년 소비자지수를 반영하여 결정된다(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세무학연구』 제38권 제2호, 2021, p.236).

84) 영국 정부홈페이지, CG15835 - Losses: targeted anti-avoidance rule from 6 December 2006 (최종 검색일: 2024.5.7.),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gains-manual/cg15835>>

85)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2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86) '영국정부 홈페이지, Tax when you buy shares (최종 검색일: 2024.4.30.), <<https://www.gov.uk/tax-buy-shares>>'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87) 인지세는 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인지대체세는 문서가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 독일: 금융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은 2008년까지 개인 주주의 배당 소득⁸⁸⁾은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하고 임퓨테이션, 절반과세제도(half-income system)⁸⁹⁾ 등에 의해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 자본이득은 단기자본이득(1년 미만)과 지분율 1%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하고 자본이익의 50%만이 과세되었다. 즉 지분율 1% 미만, 1년 이상 보유 주식의 자본이득은 비과세하였다.

2009년, 독일 정부는 자본이득에 대한 이원적 소득세제(Abgeltungsteuer)⁹⁰⁾를 도입하여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모두 과세한다.⁹¹⁾ 이원적 소득세제 하에서 EstG은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⁹²⁾ 금융소득은 25%⁹³⁾ 단일세율을 적용한 완납적 원천징수(Abgeltungssueuer)로 과세가 종결된다. 다만,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5%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금융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⁹⁴⁾ 금융소득 산정시 실제 필요경비는 차감되지 않고 대신 1인당 1,000 EUR(부부합산 과세시⁹⁵⁾ 2,000 EUR)가 일괄공제된다(Sparer-Pauschbetrag).⁹⁶⁾ 주식 자본손실은 오직 주식 자본이익에서만 상계할 수 있고 기한 없이 1백만 EUR(부부합산 2백만 EUR)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된다.⁹⁷⁾ 그 밖에, 독일은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 보유 주식 지분율이 1% 이상(중대한 지분, substantial interest)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종합소득세율 14~45%). 이 경우 부분과세제도(partial income system)에 따라 과세소득은 배당 또는 주식자본이익의 60%이다.

88) 이자소득을 포함한다.

89) 2000년부터 배당소득 원천이 개인 또는 사업용 지분인자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50%만 과세하였다(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p.72~80).

90)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을 감안하여 자본이득에 대하여 세제상 우대하는 제도로(홍범교·이상엽, 앞의 글), 독일은 2003년 논의를 시작으로, 2006년 수정된 이원적 소득세제가 제안되었고, 2009년에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가 도입되었다(오윤,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8권 제2호, 2012, p.185).

91) 독일의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 구분의 불분명, 정책적으로 투자와 자본축적, GDP, 가계소비의 증가, 특히 해외로의 자본이탈 방지와 금융소득세제의 단순화를 목적으로 한다(Bird and Zolt, 「Dual Income Tax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Tax Law May 27, 2010, pp.206-210).

92) EstG §20

93) 소득세의 5.5%에 해당하는 연대부가세(solidarity surcharge)가 추가로 부과된다.

94)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77.

95) 독일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주와 부부단위주주의(2분 2승제) 중 선택할 수 있다.

96) EstG §20(9)

97) 손실액이 이월공제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잔여 이익의 60%만 공제가가능하고 남은 40%는 이월될 자본손실로 고려된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우 고율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우리나라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표 9| 독일의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세율

(단위: EUR)

| 구분 | 중대한 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 |
|------|--------------------|-----------------|
| 세율 | 25% ⁹⁸⁾ | 14~45% |
| 공제금액 | 1,000 (부부합산 2,000) | 과세소득의 40% 면제 |

※ 주: 종합소득세율이 25% 미만이면 종합소득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자료: 독일의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재정리함

라. 일본: 자본이득 저율 분리과세+증권거래세 폐지

일본은 개인 배당소득 과세는 상장여부, 지분율에 따라 다르다. 배당소득금액은 배당금에서 주식 취득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보유주식이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율 3% 이상의 상장주식이면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된다(5~45%).⁹⁸⁾ 종합과세시 배당세액공제(배당소득금액의 5~10%)⁹⁹⁾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한편, 지분율 3% 미만인 상장주식의 배당소득과 비상장주식의 소규모 배당소득(연 100,000 JPY 미만)은 개인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15%)¹⁰⁰⁾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배당소득은 후술할 상장주식 등 자본손실 통산이 허용되나, 배당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소득세법」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나 증권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 자본이득은 앞서 살펴본 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세율과 동일한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신고분리과세를 취하고 있다. 자본이득 과세대상 주식은 상장주식 등¹⁰¹⁾과 일반주식으로 구분되며, 자본소득에 대한 손익통산은 각각 상장주식 등 내, 일반주식 내에서만 구분하여 가능하다.¹⁰²⁾ 상장주식 등 내에서 통산 후 남은 자본손실은 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이후 3년 내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과 상장주식 배당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98) 일본 과세소득(JPY) 구간별 소득세율은 ~1,950,000:5%, 1,950,000~3,300,000:10%, 3,300,000~6,950,000:20%, 6,950,000~9,000,000:23%, 9,000,000~18,000,000:33%, 18,000,000~40,000,000:40%, 40,000,000~:45%이다.

99) 배당소득금액이 제외된 일반소득금액이 1천만 JPY 초과시 배당소득금액의 5%, 일반소득금액은 1천만 JPY를 초과하나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일반소득금액은 1천만 JPY 미만인 경우 일반소득금액 중 1천만 JPY를 초과하는 소득 분에 대해서는 5%,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100)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2.1%가 추가된다(주식 자본이득에도 적용).

101) 상장주식 등은 상장주식, 채권, 펀드를 의미하며, 일반주식은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102) 이상엽·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p.231~233.

일본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와 증권거래세 비과세 체계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사례로 평가되며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¹⁰³⁾ 주식 자본이득 과세는 1947년부터 시행되었다가 1953년에 폐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0.15%)를 부과하였다. 이후 과세형평 문제를 고려하여 1989년 4월부터 주식 자본이득 과세(20%) 재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가 추진되었다. 다만, 주식 자본이득 과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율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에 1999년에 최종 폐지하였다.¹⁰⁴⁾ 이후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제도를 2001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3년부터 시행하였다. 1989년과 1998년 동안 일본의 상장주식 관련 세금은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198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2005년부터 세수 실적이 종전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⁵⁾

요약하면,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과세체계가 구분되지만 지분율 3% 미만 상장주식과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주식 자본이득과 동일한 세율(15%)로 과세된다.

표 10 | 일본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과세체계

| 구분 | | 배당소득 | 주식 자본이득 |
|-------|---------------------------|----------------------------|-------------|
| 상장주식 | 소규모 (지분율 3% 미만) | 분리과세 15% 선택 가능 | 분리과세 15% |
| | 이 외 | 종합과세 10~45% (배당세액공제 5·10%) | |
| 비상장주식 | 소규모 (배당소득금액 연 10만 JPY 미만) | 분리과세 15% 선택 가능 | 분리과세 15% |
| | 이 외 | 종합과세 10~45% (배당세액공제 5·10%) | |

※ 자료: 일본의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재정리함

마. 대만

대만은 2018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과세한다.¹⁰⁶⁾ 종합과세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5~40%)¹⁰⁷⁾ 배당소득의 8.5%에 해당하는 배당소득공제(한도: 가구 당 80,000 TWD)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시 28%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30% 또는 40% 경우 분리과세방법이 유리하다.

103) 자본시장연구원,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자본시장포커스 2019-01호), 2019, pp.2~3'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104) 1989년 0.55%에서 0.3%로 인하(△0.25%), 1996년 0.21%(△0.09%), 1998년 0.1%(△0.11%), 1999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105)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글, p.3.

106) 2017년 말 배당소득에 대한 임퓨테이션 과세체계를 폐지하였다.

107)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표준(TWD) 구간에 따라 560,000 이하:5%, 560,000 초과 1,260,000 이하:12%, 1,260,000 초과 2,520,000 이하:20%, 2,520,000 초과 4,720,000 이하:30%, 4,720,000 초과: 40%이다.

현행, 대만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2021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주식, 신흥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된다.¹⁰⁸⁾ 한편, 주식 양도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3%이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 장외상장주식(OTC)에 대해서 0.15%가 적용된다.¹⁰⁹⁾

이러한 과세체계는 1989년부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반복적인 과세와 비과세 과정을 거쳐 이르렀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¹¹⁰⁾ 1989년 대만은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과열되자¹¹¹⁾ 금융시장 안정화와 조세정의를 위해 1989년 1월 1일부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기로 하였다.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자¹¹²⁾ 증권거래세율 인하(0.3%→0.15%), 주식 자본이득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110,300 달러→367,600 달러) 하였다. 이에 다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었으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주식 자본이득 회피사례 등으로 1990년 1월, 주식 자본이득세를 비과세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6%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2013년 주식 자본이득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을 2018년까지 유예하였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2016년 과세방침을 철회하였다.

요약하면, 대만은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부담에 차이가 존재한다.

3.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비교 대상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 거래)으로 한정한다.

첫째, 현행 기준, 조사 국가 중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체계는 미국, 독일, 일본은 분리과세방식을, 영국은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¹³⁾ 이러한 과세체계는 응익과세원칙을 정립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따른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미국은 결집효과가 필요한 기준을 주식의 장·단기 보유로 설정하여 장기보유시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2단계 세율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데 이는 자본이득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108) Income Basic Tax Act Article 12, 18.

109) Inves Taiwan, *Securities Transaction Tax* (최종 검색일: 2024.5.1.), <<https://investtaiwan.nat.gov.tw/showPage?lang=eng&search=603>>

110) '자본시장연구원, 앞의 글, pp.3~4'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11) 대만 TWSE 지수는 1988년 1월 2,341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발표 시점인 9월 24일 8,789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12) 과세안 발표 직후 한달동안 TWSE 지수는 8,789에서 5,615로, 일일 거래금액은 17.5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급락하였다.

113)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면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원천별로 별개로 과세하는 것은 분리과세라고 한다(김완석·정지선, 앞의 글, p.278).

또한 손익통산, 자본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담 완화장치를 인정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들은 동일 자본이익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미국은 순자본손실의 일반소득 내 손익통산을 인정한다. 해당 국가들은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일본(3년)을 제외하고 이월공제기한을 한정하지 않는다.

둘째, 조사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체계가 상이하여 두 소득 간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으며, 세율만 단순 비교하면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배당소득 세율이 자본이득세율 보다 1.25%p 낮지만, 고세율과 추가세율 구간에서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 보다 각각 13.75%p, 19.35%p 높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기준, 우리나라와 대만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하여 형평성 보다는 증권시장 참가자들의 자본시장 투자수요 위축의 방지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어도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상이하여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¹¹⁴⁾

셋째, 주식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식 자본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대만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¹¹⁵⁾

【표 11】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거래)에 대한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비교

| 구분 | 배당소득 | | 주식 자본이득 | | | |
|----|---|-----------------|--|------|---------|-----|
| 한국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 종합과세 (6~45%) 또는 | 비과세 | | | |
|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 분리과세 (14%) | 20·25% | | | |
| 미국 | 분리과세: 적격배당소득 15·20% 종합과세: 비적격배당소득 10~37% | | 분리과세: 장기보유 15·20% 종합과세: 단기보유 10~37% | | | |
| 영국 | 분류과세 | 기본세율 구간 | 8.75% | 분류과세 | 기본세율 구간 | 10% |
| | | 고세율 구간 | 33.75% | | 고세율 구간 | 20% |
| | | 추가세율 구간 | 39.35% | | 추가세율 구간 | |
| 독일 | 분리과세 (25%)와 종합과세 (14~45%) 중 선택 | | 분리과세 (25%)와 종합과세 (14~45%) 중 선택 | | | |
| 일본 | 분리과세: 15% 선택 가능 | | 분리과세: 15% | | | |
| 대만 | 분리과세 (28%)와 종합과세 (5~40%) 중 선택 | | 비과세 | | | |

※ 주: 세율은 본세만 의미하며, 부가세(surtax)는 포함되지 않음

※ 출처: 조사 국가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거래)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증권거래세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리함

114) 단순히 세율만 비교할 경우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배당소득세율은 14%로 주식 자본이득세율 20% 또는 25% 보다 낮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종합소득세율 6~45%) 주식 자본이득세율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두 소득간 세부담의 차이는 배당세액공제, 자본손실 통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5) 세율은 상장주식 0.15%, 비상장주식 0.3%이다.

|표 12|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 거래) 주식 자본이득 및 증권거래세 과세제도 비교

| 구분 | 손익통산 (이월공제기간, 한도) | 연 소득공제금액 | 증권거래세 |
|----|--|-------------------------|---------------------|
| 한국 | 금융투자소득금액 내 손익통산 허용 (5년, 한도 없음) | 50,000,000원 | 코스닥 0.15%, 코넥스 0.1% |
| 미국 | 자본이득 내 손익통산 허용, 순자산손실 일반소득에서 손익통산 허용 (무제한, 1,500 USD ¹⁾) | - | - |
| 영국 | 자본이득 내 손익통산 허용 (무제한, 한도 없음) | 3,000 GBP | 인지대체세(0.5%) |
| 독일 | 주식 자본이익 내 손익통산 허용 (무제한, 1백만 EUR ²⁾) | 1,000 EUR ²⁾ | - |
| 일본 | 상장주식 자본이익 내 손익통산 허용(3년, 한도 없음) ³⁾ | - | - |

※ 주: 1) 미국 납세자가 독신자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기준임, 2) 독일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과세를 적용하였을 때 한도임, 3) 상장주식 통산 후 남은 자본손실은 신고분리과세 선택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 자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와 조사 국가의 자본이득 과세체계, 증권거래세 규정을 요약함

IV.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과 주요 국가들의 과세체계를 토대로 「소득세법」상 주식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조세형평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응익과세원칙에 충실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¹¹⁶⁾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글로벌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손익통산방식, 자본손실 이월 등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응익과세원칙 하에 자본이익에 대해 보편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식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고, 그 투자에 대한 성과로 배당소득과 일정 수준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대체 투자수단인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측면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은 2천만원이 고려되었으나,¹¹⁷⁾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상장주식 자본이득이 과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충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¹¹⁸⁾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116) 이상엽·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117)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앞의 글, 2020.6.25., p.10.

118) 문성훈·오문성,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2022, p.82 및 이상엽·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222.

기본공제액(5천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과 비교할 때 각각 금융소득,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¹¹⁹⁾ 그러나, 기본공제액 조정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금융상품 별 투자 규모, 투자의사결정에의 영향, 자본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손익통산은 금융상품과 무관하게 통산하나 기본공제액은 금융상품 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¹²⁰⁾ 기본공제액의 그룹 별 차등 적용은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별 투자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또는 그룹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득 전환 또는 유형 변경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금융상품 그룹 별로 구분한 당초 정책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¹²¹⁾

2.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 간 세제중립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은 각각 금융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의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므로 납세자 상황에 따라 두 소득 간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주주의 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재투자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소득 간 세제 중립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¹²²⁾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임퓨테이션방식¹²³⁾이 아니라 분리과세(미국은 적격배당에 한함)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방법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조정되나, 높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불충분하게 조정되는 문제점을 가진다.¹²⁴⁾ 한편, 분리과세방식은 별도의 귀속법인세액 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구조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다.¹²⁵⁾

119) 위의 글

120) 문성훈·오문성, p.82.

121) 이러한 견해에서는 손익통산도 그룹별로 허용하고 통산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문성훈·오문성, 앞의 글, p.82).

122)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의안번호 2103324)」, 2020.11., p.107.

123) 수취한 배당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귀속법인세액을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124) 김완석·황남석, 앞의 글, p.50.

125)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p.110~111.

이러한 해외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의 세제중립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독일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배당소득과 자본손실 간 손익 통산 여부, 제도화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재정비 등 추가적 논의와 개정작업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현행과 같이 금융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을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배당소득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상장주식 소액주주,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낮은 세율 또는 배당소득의 일부만을 과세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부분조정 임퓨테이션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가 있다.¹²⁶⁾

3. 결집효과 완화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이익의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의 제외(예, 자본이익의 50% 과세), 낮은 세율로의 분리과세,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우대조치 등이 제안된다.¹²⁷⁾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낮은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되,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하고 2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최고세율이 25%로 종합소득 최고세율 보다 낮으므로 결집효과를 고려한 과세체제로 볼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¹²⁸⁾ 이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인하고 결집효과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동결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 세제혜택 부여시 보유기간을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세법체계가 복잡해 질 수 있다. 또한 장기투자자가 경영권 확보와 관련 있음을 감안하면 대주주가 장기보유 세제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역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¹²⁹⁾ 따라서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체계 하에서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보다 앞서 논의한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26) OECD Statistics, Table II.4. Overall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 income(<https://stats.oecd.org/>, 최종검색일: 2024.5.1.)

127) 김완석·정지선, 앞의 글, pp.113~114.

128) 이영, 「서초포럼: 금투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파이낸셜뉴스』, 2024.1.16.

129) 이상엽·송은주·서동연, 앞의 글, pp.252~253.

4.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시 해외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유출, 국내 주식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이에 금융투자 활성화 및 국내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다.¹³⁰⁾ 이와 반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국내상장주식 등 기본공제액 5천만원과 자본손실 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감안하면 소액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 완화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는 것 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회계 불투명성, 주주환원을 제고 등도 병행하여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¹³¹⁾ 이렇듯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국민소득과 자본시장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배당·양도소득 등 투자동기에 따른 차익거래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점, 대내외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시간, 건전한 장기 분산 투자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증권거래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와 세수 영향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시행 첫 해,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이나 그 외의 주식시장의 경우 종전 보다 낮지만, 여전히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 주식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주요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고, 영국은 인지세 형태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단기매매의 시장변동성을 억제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견해와¹³²⁾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금융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상반된 주장¹³³⁾이 존재한다. Haberer(2004)은 거래세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감소시키나,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증권거래세의

130)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2024.6.12.

131)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483)」, 2024.2., p.15.

132) 이상윤,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20.,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1936, pp.158~160.

133) 문성훈·임동원,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2019.

영향력은 주식시장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제도 정착 단계시 코스피 이외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점차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증권거래세 존폐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금융투자소득세가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종전에 과세되지 않았던 상장주식과 채권 양도소득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과세소득의 변화는 개인 소득금액을 판단 지표로 하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¹³⁴⁾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¹³⁵⁾ 연간 소득금액 요건 판단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¹³⁶⁾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금액과 합하여 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¹³⁷⁾ 그러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변동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비근로소득인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같이 별도의 상향된 금액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물가상승,¹³⁸⁾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액 소득금액 조정시 요건 상향¹³⁹⁾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세수감, 면세자 수 증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 금액의 합계액으로¹⁴⁰⁾ 양도소득은 제외되어 있다.¹⁴¹⁾ 현행 관련

134) 나이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다.

135) 「소득세법」 제50조

136) 2002.12.18. 법 개정 전에는 공제대상 배우자의 소득금액기준이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2009. 12. 31. 법 개정시 사업소득으로 통합)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였으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1헌바 82, 2002. 8. 29)에 따라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지 않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다.

137) 진영기,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 『한경닷컴』, 2024.5.30.

138)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1%, 2019년 99.5%, 2020년 100%, 2021년 102.5%, 2022년 107.7%, 2023년 111.6%(전년 대비 3.6% 상승)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139) 윤재옥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액 상향, 기본공제액 소득금액 요건 연 2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으로 확대,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113)」, 2022.8.31.).

140)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14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법에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과 구분된 양도소득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금융투자소득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V. 결론

금융세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금융투자 상품 간 동일 과세체계 확립을 통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음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첫째,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공제액은 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그 외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으로 그룹 별로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이는 금융소득,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기본공제액 조정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 확대에 따른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 금융상품 별 투자 규모, 투자의사결정에의 영향과 자본시장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주식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주요 자본선진국들은 대부분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되,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이 그 대상을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따른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 최고세율 보다 낮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하므로 결집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보유주식의 혜택 보다 앞서 논의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성 도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수직적 공평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된다. 이렇듯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국민소득과 자본시장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배당·양도소득 등 투자동기에 따른 차익거래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점, 대내외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시간, 건전한 장기 분산 투자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제도 정책 단계에 코스피 시장 외의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는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세수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중립성과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향상시켜 자본시장과 금융체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
-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6.25.
 -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2024.7.3.
 -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11.
 - *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 *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2022.8.23.
 -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의안번호 2103324)」, 2020.11.
 -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제출, 의안번호 2117169호)」, 2022.11.
 -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6482, 2126483)」, 2024.2.
 - *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서울: 삼일인포마인, 2023.
 - *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23판, 서울: 삼일인포마인, 2023.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483), 2024.2.2.
 - * 문성훈·오문성,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2022.
 - * 문성훈·임동원, 「주식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2019.
 - * 송중호, 「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서울경제』, 2024.4.24.
 - * 오윤,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8권 제2호, 2012.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113)」, 2022.8.31.
 - * 이상엽·송은주·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세무학연구』 제38권 제2호, 2021.
 - * 이상윤, 「증권거래세 인하의 시장 유동성 및 변동성에 대한 효과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20.
 - * 이영, 「서초포럼: 금투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파이낸셜뉴스』, 2024.1.16.
 - * 자본시장연구원,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자본시장포커스 2019-01호), 2019.
 - * 전병목·송은주·서동연,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세법연구 2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 진영기,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 『한경닷컴』, 2024.5.30.
 - * 차병섭·이영, 「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권 제4호, 2007.

-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2.8.23.
- *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0.
- * 홍범교·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 Bird, Richard M. and Zolt, Eric M., 「Dual Income Taxation and Developing Countries」, *Columbia Journal of Tax Law* May 27, 2010.
- * Cook, E. and J. O'hare, Issues Relating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National Tax Journal* 40(3): 473~488, 1987.
- * Cunningham, N. and D. Schenk, 1993, 「The Case for a Capital Gains Preferences」, *Tax Law Review* 48 (Spring): 319~380.
- * Dai, Z., E. Maydew, D. Shackelford and H. Zhang, Capital Gains Taxes and Asset Prices: Capitalization or Lock-In?, *Journal of Finance* 63(2): 709~742, 2008.
- * Earnst & Young(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2023-24」, 2024.
- * Feldstein, M., J. Slemrod and S. Yitzhaki, The Effects of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4): 777~791, 1980.
- * Guenther, D. and M. Willenborg, Capital Gains Tax Rates and the Cost of Capital for Small Busines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3(3): 385 ~ 408, 1999.
- * Haberer, M. 2004. Might a securities transaction tax mitigate excess volatility? Some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CoFE discussion paper 04-06. Konstanz : Center of Finance and Econometrics, University of Konstanz.
- *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ew York : Harcourt Brace, 1936.
- * Landsman, W., and D. Shackelford, The lock - in effect of capital gains taxes : Evidence from the RJR Nabisco leverage buyout, *National Tax Journal* 48 : 245~259, 1995.
- * Lang, M. and D. Shackelford, Capitalization of Capital Gains Taxes: Evidence from Stock Price Reactions to the 1997 Rate Redu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1): 69~85, 2000.
- * Minarik, J.,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Selling of Corporate Stock and the Realization of Capital Gains; Com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1): 93~110, 1984.

- * OECD,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Paris: OECD, 2006.
- * Poterba, J., and L. Summers, New Evidence That Taxes Affect the Valuation of Dividends, *Journal of Finance* 39: 1397~1415, 1984.
- * Poterba, J. and S. Weisbenner, Capital Gains Tax Rules, Tax-Loss Trading, and Turn-of-The-Year Returns, *Journal of Finance* 56(1): 353~368, 2001.
- * Reese, W., Capital Gains Taxation and Stock Market Activity: Evidence from IPOs, *Journal of Finance* 53(5): 1799~1819, 1998.

〈웹페이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 * GOV.UK, 〈<https://www.gov.uk/tax-on-dividends>〉
- * Inves Taiwan, 〈<https://investtaiwan.nat.gov.tw>〉
-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https://stats.oecd.org/)〉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 호수 | 제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324호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국적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유사 국가 입법례를 중심으로 | 2024.6.28. | 김보람 |
| 제323호 |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 2024.6.24. | 장경석 |
| 제322호 |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 2024.6.4. | 허민숙 |
| 제321호 | 남북한 공유하천 이용·관리를 위한 남북 협력 방향 | 2024.5.29. | 정민정·심성은 |
| 제320호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 | 2024.5.16. | 김은정 |
| 제319호 |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여성의원 총원패턴의 변화와 지속 | 2024.5.10. | 전진영·송진미· 황선주 |
| 제318호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 미국의 활용례를 통해 살펴본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쟁점과 과제 | 2024.3.29. | 이수진 |
| 제317호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사법조사처의 역할 | 2024.3.18. | 이승열 |
| 제316호 |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 2024.3.11. | 하혜영·임준배 |
| 제315호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 2024.2.5. | 최은진 |
| 제314호 |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 홍수, 가뭄 등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 | 2024.1.16. | 김진수 |
| 제313호 | 법 집행 기능 회복을 위한 공무수행자 보호 입법 방안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 통제를 중심으로 | 2023.12.28. | 이재영 |
| 제312호 |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와 시사점 | 2023.12.28. | 박소현 |
| 제311호 |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 2023.12.27. | 정용제 |
| 제310호 |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회를 중심으로 - | 2023.12.21. | 김태엽 |
| 제309호 |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 정착 필요 - | 2023.12.18. | 황성필·박윤정 |
| 제308호 |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 2023.12.12. | 문심명 |

| 호수 | 제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307호 |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2023.11.20. | 허민숙 박재연 |
| 제306호 |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행위 규제 논의의 쟁점 | 2023.11.15. | 이소영 |
| 제305호 |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 2023.11.14. | 김도희·형혁규·김예경· 박명희·심성은 |
| 제304호 |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 - 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 - | 2023.11.7. | 구세주 |
| 제303호 | 교권 보호 4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 2023.11.2. | 이덕난 |
| 제302호 | 포털뉴스의 평가와 영향: 실증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 2023.10.27. | 최진응 |
| 제301호 | 가석방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 도입의 전제 | 2023.10.19. | 김광현 |
| 제300호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조건과 효과에 대한 검토 | 2023.8.10. |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T/F |
| 제299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2023.8.9. | 유재국 |
| 제298호 |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023.7.28. | 이예지 황성필 |
| 제297호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비교 | 2023.7.24. | 배재현 |
| 제296호 | 선출직지방공직자 주민소환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 2023.7.21. | 하혜영 |
| 제295호 | 만화·웹툰 산업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 | 2023.6.5. | 박제웅 |
| 제294호 | 선거제 개편 논의, 왜 침체에 부딪혔나? : 새로운 대안 및 전략에 대한 모색 | 2023.5.31. | 고원 정치발전 제도개선T/F |
| 제293호 |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정치발전제도개선 TF) | 2023.5.25. | 김선화 오창룡 |
| 제292호 | 섬 지역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 2023.5.22. | 하혜영 |
| 제291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 2023.5.10. | 이덕난 유지연 |



NARS 현안분석 제325호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
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02-6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23-001616-14
ISSN 2586-565X

